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37회 임시회〉

2015. 9. 8.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정 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비슬산자연휴양림 입구 주차장 매입 부지에 연수원을 건립하여 기업,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 등의 교육 및 연수를 활성화하고
-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달성군 및 비슬산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비슬산 연수원 건립
 - 대지위치 : 유가면 휴양림길 226 (용리 31-2, 31-3번지)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10월
 - 대지면적 : 5,949m²
 - 건축규모 : 연면적 4,950m² (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 객실, 대강당, 회의실, 연회장, 식당, 카페 등
 - 사 업 비 : 15,620,000천원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붙임 :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현장사진 및 위치도 1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 득	계		6(10)	177,371.7	15,324,005	1	4,950	15,620,000	7(10)	182,321.7	30,944,005
	1.매입	토지	3(10)	171,159.7	2,689,237				3(10)	171,159.7	2,689,237
		건물	2	5,372	11,151,067				2	5,372	11,151,067
	2.교환										
	3.기타	토지									
		건물	1	840	1,483,701	1	4,950	15,620,000	2	5,790	17,103,701
처 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채육	채육	현풍면	성하리	235-4	4,875	4,875	11,000,000,000	2016년	증개축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4. 12월 의회의결
2	답	전	유가면	용리	31-1	989	989	83,076,000	2015년	주차장 부지 매입	현풍면 현풍로6길 3-13	정재인	“
3	잡종지	잡종지	유가면	용리	31-2	5,860	5,860	1,042,494,000	“	“	북구 구암동 785 화성그랜드 파크 302동207호	성영익	“
4	잡종지	잡종지	유가면	용리	31-3	89	89	16,447,200	“	“	북구 구암동 785 화성그랜드 파크 302동207호	성영익	“
5	임야	임야	유가면	용리	산2-21	4,766	4,766	10,103,920	“	“	유가면 도의길 86	손삼출 외 2인	“
6 (건물)	잡종지	잡종지	유가면	용리	31-2, 3	497	497	151,066,740	“	매점 등	북구 구암동 785 화성그랜드 파크 302동207호	성영익	“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 고
	공 부	사 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7	대	대	유가면	봉리	600	1,926.8	1,926.8	665,813,447 (조성원가)	2015년	공공청사 및 주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한토지 주택공사	2015. 4월 의회의결
8	대	대	유가면	봉리	600-3	595	595	205,604,630 (조성원가)	“	“	“	“	“
9	대	대	유가면	봉리	600-2	331	331	114,378,374 (조성원가)	“	“	“	“	“
10	대	대	유가면	봉리	600-1	999.9	999.9	345,519,445 (조성원가)	“	“	“	“	“
11 (건물)	전	대	논공읍	금포리	1425-16	1,078	840	1,483,701,000 (사업비)	2016년	창고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
	임	대	논공읍	금포리	산29-5	463							
	임	대	논공읍	금포리	산34-9	893							
12	임야	임야	옥포면	기세리	산68-1	154,413	154,413	203,825,160 (1,320/㎡)	2015년	옥연지 삼림육장 조성 사업부지	경북 경산시 백자로 10길 11, 611동 401호	김정훈	2015. 7월 의회의결
13	임야	임야	옥포면	기세리	산86-2	1,190	1,190	1,975,400 (1,660/㎡)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추 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잡	잡	유가면	용리	31-2	5,860	4,950	15,620,000,000 (사업비)	2017년	연수원 건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군유지
	잡	잡	유가면	용리	31-3	89							

현 장 사 진

□ 위치 : 달성군 유가면 용리 31-2, 3번지(잡종지, 5,949㎡)



위 치 도

□ 재산위치 : 달성군 유가면 용리 31-2, 3번지(잡종지, 5,949㎡)



Ⅱ. 검토의견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과 각종 단체의 교육 및 연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비슬산 자연휴양림 입구 주차장 매입 부지에 연수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리 군내에는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의 개발에 따라 각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기업체들이 많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시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에 대구학생수련원과 같은 다른 연수시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요예측을 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연수시설 운영사례 및 연수시설의 건립 후 수익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계법령 1부.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9.5.29)

3.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8월 24일
2. 제 출 자 : 하용하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가. 2010. 4. 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1. 4.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음.
- 나. 2013. 12. 3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
하는 조항이 신설됨.
- 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조례 전문)
-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뀜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

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상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함.

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안 제12조의2)

5.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2, 제11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1년 4월 5일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음.
- 2013년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는 조항이 신설됨.
- 이상과 같이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및 전문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이라는 문구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상품”을 “제품”으로 한다.

제3조, 제2장 제목, 제5조, 제6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제3장 제목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같은 항 제5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제10조 제목과 같은 조 제1

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표시를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 군수는”을 “따라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제2항에”를 “제9조제1항에”로 하며, 제11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에 의한 군수는 친환경 상품 구매의무”를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

색제품”으로 한다.

제4장 제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7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u>	<u>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생략) 3. “자발적협약”이란, 민간업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제1조(목적) ----- 「녹색제품 ----- -----」 ----- ----- 녹색제품 ----- -----. 제2조(정의) ----- 뜻은 -----. 1. “녹색제품” -- 「녹색제품 ----- -----」 ----- ----- 제품-----. 2. (현행과 같음) 3. -----, ----- 녹색 제품- -----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녹색제품----- -----」 -----
제4조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장 녹색제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5조(구성)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의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구성) ----- 녹색제품 ----- ----- ----- 녹색제품 ----- ----- ----- -----.

현행	개정안
제6조(기능) 협의회는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친환경상품</u>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내 <u>친환경상품</u> 생산과 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u>친환경상품</u>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부</u> <u>의하는</u> 사항 제8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u>안에서</u>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u>친환경상품</u> 의무 구매제의 이행 등 제9조(<u>친환경상품</u> 구매·생산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u>친환경상품</u>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u>친환경상품</u>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u>친환경상품</u>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u>친환경상품</u>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u>친환경상품</u>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u>친환경상품</u>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능)----- -----. 1. ----- <u>녹색제품</u> ----- 2. -- <u>녹색제품</u> ----- ----- 3. ---- <u>녹색제품</u> ----- ----- <u>회</u> <u>의에</u> 부치는 ---- 제8조 (실비보상 등)----- ----- ----- ----- <u>범위에서</u> ----- -----. 제3장 <u>녹색제품</u> 의무 구매제의 이행 등 제9조(<u>녹색제품</u> 구매·생산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①----- ----- <u>녹색제품</u> ----- ----- <u>녹색제품</u> ----- -----. ② ----- -----. 1. <u>녹색제품</u> ----- ----- 2. <u>녹색제품</u> ----- ----- 3. ----- <u>녹색제품</u> ----- ----- 4. --- <u>녹색제품</u> ----- -----

현행	개정안
5. 군민의 <u>친환경상품</u>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u>친환경상품</u> 구매이행 계획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u>친환경상품</u>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u>친환경상품</u>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u>친환경상품</u> 구매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u>친환경상품</u>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를 등 <u>친환경상품</u>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u>친환경상품</u>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u>친환경상품</u>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u>친환경상품</u> 구매이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1조(<u>친환경상품</u>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u>친환경상품</u>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친환경상품</u>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u>친환경상품</u>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5. 군민의 <u>녹색제품</u>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u>녹색제품</u> 구매이행 계획 수립) ① ----- 따라----- ----- <u>녹색제품</u> ----- ----- <u>녹색제품</u> ----- ----- -----. ② ----- <u>녹색제품</u> ----- -----. 1. <u>녹색제품</u> ----- ----- <u>녹색제품</u> ----- 2. <u>녹색제품</u> ----- ----- 3. ----- -- <u>녹색제품</u> ----- ----- ③ ----- ----- ----- <u>녹색제품</u>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u>녹색제품</u> 구매실적 관리) ① ----- ----- 따라 군수가----- ----- <u>녹색제품</u> ----- -----. 1. <u>녹색제품</u>----- ----- 2. <u>녹색제품</u>----- -----

현행	개정안
3. <u>친환경상품</u>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u>친환경상품</u>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u>친환경상품</u>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u>친환경상품</u>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시장에게 제1항의 <u>친환경상품</u>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3. <u>녹색제품</u> ----- ----- 4. <u>녹색제품</u> ----- ----- 5. <u>녹색제품</u> ----- ----- ② <u>녹색제품</u> ----- -----. ③ -- 제9조제1항에 ----- ----- <u>녹색제품</u>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의한 군수는 친환경 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친환경상품</u>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u>친환경상품</u>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생략) 3. <u>친환경상품</u>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생략) 5. <u>친환경상품</u>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 제6조에 따른 군수의 <u>녹색제품</u> 구매의무의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u>녹색제품</u> ----- -----. 1. ----- <u>녹색제품</u> ----- ----- 2. (현행과 같음) 3. <u>녹색제품</u> ----- ----- ----- 4. (현행과 같음) 5. <u>녹색제품</u> ----- ----- -----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친환경상품</u>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u>친환경상품</u>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u>의한</u>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u>친환경상품</u>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u>친환경상품</u> 기준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u>친환경상품</u>의 생산과 소비촉진	제12조2(<u>녹색제품</u> 구매담당관 지정) ① 군수는 <u>녹색제품</u>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녹색제품</u>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u>녹색제품</u>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u>녹색제품</u>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u>녹색제품</u>을 구매한 <u>녹색제품</u> 구매담당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u>녹색제품</u>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u>녹색제품</u>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u>녹색제품</u>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제1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u>녹색제품</u> ----- <u>녹색제품</u> -----. 1. ~ 3. (현행과 같음) 4. ----- <u>따른</u> ----- 5. (현행과 같음) ② ----- <u>녹색제품</u>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녹색제품</u> -----. 제4장 <u>녹색제품</u>의 생산과 소비촉진

현행	개정안
제14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 판매지원) ① 군수는 <u>친환경상품</u>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u>친환경상품</u>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생산유통 판매지원) ① ----- <u>녹색제품</u> ----- ----- ----- ----- ----- <u>범위에서</u> ----- -----. ② ----- <u>녹색제품</u> ----- ----- -----.
제15조(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군수는 <u>친환경상품</u>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 <u>녹색제품</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u>친환경상품</u>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u>친환경상품</u>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u>친환경상품</u>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 ----- <u>녹색제품</u>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u>녹색제품</u> ----- -----. ③ ----- <u>녹색제품</u> ----- ----- -----.
제17조(포상) 군수는 <u>친환경상품</u>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 <u>녹색제품</u> ----- ----- ----- ----- -----.

붙임 3)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농업정책과)
3. 제정이유

○ 달성군 관내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내수면어업인

나. 지원대상 사업

- (1)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안정 등(안 제6조)
- (2)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안 제7조)
- (3) 유통체계 선진화(안 제8조)
- (4) 친환경농업 육성(안 제9조)
- (5) 축산 및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안 제10조)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 「내수면어업법」 제17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및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데에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으며,
- 2014.5.28.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①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경우의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달성군 관내 농업인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모든 법규의 내용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면서 각 조의 마지막 호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대상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차후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조례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지출은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대한 조례직접규정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 바람직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능동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대상사업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17조에 따라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 및 내수면어업인의 소득, 삶의 질 및 농업과 내수면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에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9.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고, “내수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인”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과 그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 및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 농업 및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내수면어업인의 책무)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이 조항에서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과 내수면어업인은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과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내수면어업인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안정 등)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농업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사업
2. 농기계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 지원 사업
3.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계약재배 지원, 벼 건조수수료 지원, 공공비축용 포대 지원, 소득보전금 지원 사업
4.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가소득안정,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군수는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안정기반 구축으로 고소득 창출을 위해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기자재 보급, 농업 기계화 촉진, 생력화 지원, 생산시설 현대화, 농약보관함 공급 사업
2.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병해충 방제, 비닐하우스 연작피해 대책, 우량종자 보급, 육묘용 기자재 보급 사업
3.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농산물과 식품의 소비촉진 및 홍보, 농산물과 식품산업 육성 및 우수브랜드 육성지원,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유통 및 물류 개선, 농산물박스 보급, 특화작목 지원 사업
4. 그 밖에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유통체계 선진화) 군수는 안전농산물 선진물류시스템 구축 등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전시·판매하여 대내외적인 홍보와 농업인·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운영 사업
2. 농특산물의 집하·선별·저장·포장·물류 등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등 유통기반 현대화 사업
3. 저온유통기반과 품질향상을 위한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신선농산물 출하조절, 신선도 유지 등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4.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5.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품질향상, 시장판로 확대 등을 위한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연계 사업
6.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매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 및 택배용 포장 상자 지원 사업
7. 그 밖에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친환경농업 육성) 군수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및 원예단지 육성 지원 사업
2. 농업환경 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도모를 위해 농업용 기자재 지원 사업
3.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4. 친환경농업 확산 및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소득보전사업 및 친환경 인증 지원 사업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축산 및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 군수는 축산농가 및 내수면어업인에 도움이 되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축산농가 및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축산업 및 내수면어업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의 개량 및 증식을 위한 지원 사업
2. 가축 사양관리를 위한 장비, 기자재 등 지원 사업
3. 축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수분 조절재, 약품, 기자재, 축산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4. 고급육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5. 가축의 안정적 사육을 위한 생산안정제 보전금 및 재해보험 공제료 지원 사업
6. 꿀벌, 염소등 기타가축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기자재, 장비 지원 사업
7. 말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8.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기자재, 생산 장비, 가공시설 확충, 사일리지제조·구입 및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

9. 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0.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 사업
11. 축산농가의 선진축산기술 습득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선진 축산지역 연수 지원
12.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가축방역 시설(기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13.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4. 그 밖에 축산 및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 및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농업·농촌과 내수면어업의 발전 및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주요내용 : 달성군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달성군 관내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 규정 마련.

2. 비용발생 요인

○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3. 관련조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 13,240백만원 정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농업경쟁력강화, 농가소득 안정 지원 사업 = 4,360,000천원
-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4,300,000천원
- 유통체계 선진화 지원 사업 = 200,000천원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 = 2,380,000천원
- 축산 및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2,0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반영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6. 작성자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권은란

[별 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6,080,000	6,100,000	6,120,000	6,140,000	6,160,000	30,600,000
국비 + 시비		6,080,000	6,100,000	6,120,000	6,140,000	6,160,000	30,600,000
세 출		13,240,000	13,310,000	13,380,000	13,450,000	13,520,000	66,900,000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13,240,000	13,310,000	13,380,000	13,450,000	13,520,000	66,900,000
재원 조달							0
의존 재원	소 계						0
	보조금						0
	지방교부세						0
자체 수입	소 계						0
	지방세						0
	세외수입						0
지방채							0
국 비		2,660,000	2,660,000	2,670,000	2,680,000	2,690,000	13,360,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 비		3,420,000	3,440,000	3,450,000	3,460,000	3,470,000	17,240,000
군 비		7,160,000	7,210,000	7,260,000	7,310,000	7,360,000	36,300,0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붙임 2)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건축과)

3. 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게 됨.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달성군을 잘 알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7조)

라.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5.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 달성군은 인구의 증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확장 등으로 도시가 급격히 발전하는 이면에 기존 부락의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 상대적으로 쇠퇴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업무를 추진할 전담조직의 설치 및 전문성을 갖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등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광역시장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 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운 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중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말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나.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
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라. 조형물, 벽화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른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사무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또는 기능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0조를 따른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

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달성군을 잘 알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개·보수 및 정비 비용 등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 비용의 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으로 운영 중인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주요내용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규정 마련(안 제7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 마련

2. 비용발생 요인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 관련조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조례안 제7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 200백만원 정도**

○ 인건비

- 센터장 : 417만원 × 12개월 × 1명 ≒ 50,000,000원
- 팀 원 : 334만원 × 12개월 × 2명 ≒ 80,000,000원

○ 운영비

- 출장비, 장비 및 용품구입, 사무관리비 등
584만원 × 12개월 ≒ 7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반영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6. 작성자 : 건축과 디자인팀 박국희

[별 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붙임 2)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경제과)

3. 제정이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사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규정(안 제1조)
- 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
- 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안 제3조)
 - (1) 노동단체 주관의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 (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사업
 - (3)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
 - (4) 근로자 산업연수 등

- 라. 지원대상은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달성군지역조직에
해당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4조)
- 마. 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절차를 규정(안 제5조)
- 바.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6조)

5.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사업(제3조) 및 지원대상(제4조)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되나,
- 법규의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의 제3조 제5호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개별 지원사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의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3.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
4. 근로자 국 내 · 외 산업연수
5.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달성군지역 조직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주요내용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정책 지원 규정 마련
 -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제4조)

2. 비용발생 요인

- 노동단체 각종 사업 지원

3. 관련조문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노동단체 주관 행사, 교육, 연수 등 지원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 115백만원 정도**

- 노조간부 집체 교육비 : 50,000원*100명 = 5,000,000원
-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 : 100,000원*100명 = 10,000,000원
-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연수 : 2,000,000원*20명 = 40,000,000원
- 근로자의 날 노사정 화합잔치 지원 : 30,000,000원
-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 3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반영 및 광역보조금 확보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6. 작성자 : 경제과 경제노동팀 이예홍

[별 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115,000	125,000	135,000	145,000	155,000	675,000
노동단체 지원		115,000	125,000	135,000	145,000	155,000	675,000
재원 조달		115,000	125,000	135,000	145,000	155,000	67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30,000	30,000	33,000	33,000	35,000	161,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비		85,000	95,000	102,000	112,000	120,000	514,0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붙임 2)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

3. 개정이유

가. 달성문화센터 이용료 감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분쟁소지를 해소하고 달성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나. 달성문화센터 장기이용료 및 단체 할인에 관한 요금 체계를 정립하여 현실적인 이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중 1일 입장요금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사물함 이용료를 명시하며, 장기등록 이용회원 및 운영시간 증감에 따른 이용료 조정(안 제11조 중 별표1)

나. 시설이용료 감면 대상을 수영장·헬스장으로 명확화하고,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단체감면 규정 신설(안 제12조)

다.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공평한 사용기회 제공 및 반환관련 분쟁소지 해소(안 제13조)

5.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 발취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개정안은 달성문화센터의 수영장과 헬스장의 시설이용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별표1】**,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어 수영장과 헬스장의 이용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던 이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별표2】**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등의 규정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달성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정을 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3항 중 “종료”를 “완료”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되었을 경우”를 “되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가”를 각각 “군수는”으로 하고, “이용료의”를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이용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영장 1일 입장 이용시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체감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부분 중 “사용일 전일까지”를 “사용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 1. 제10조제1항제6호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 반환
 -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0% 반환
 - 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④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2에 따라 반환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잔표와 수표가”를 “잔여표와 검표가”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때에는 손해배상”을 “때 사용자는 손해배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부분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무료시설 이용”을 “시설의 무료이용”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부분 중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출연하여”를 “출연하여 설

립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부분과 같은 조 제4항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5조에 규정한”을 “제5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원금”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탁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및 수탁 받은 재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1호 중 “제24조 규정의”를 “제24조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28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개정2011.12.30)

(단위 : 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 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부가가치세액 (10%) 포함 * 동일단체 소속 1일 입장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이용 요금	50,000														
사물함	이용 요금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000원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달성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개정2012. 5. 10)

가. 대 관 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장(백년홀)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회의실	오 전	30,000	
	오 후	30,000	
	야 간	50,000	
전시실(백년갤러리)	1일	3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 가. 오전 - 09:00 ~ 12:00
- 나. 오후 - 13:00 ~ 17:00
- 다. 야간 - 18:00 ~ 22:00
-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심야시간(22:00~익일08:00)의 시설사용은 “야간 요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함(3,4,5항 적용하지 않음)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설 비 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	
무대조명		1회	25,000	
음향	유선마이크	1회	개당 5,000	
	무선마이크	1회	개당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CD 플레이어	1회	10,000	
무대시설	보면대	1회	10,000	
	의자	1회	10,000	
냉·난방	공연장	1회	80,000	
	전시실	1일	30,000	
	회의실	1회	40,000	

-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3) 소모품(건전지, CD, DVD,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4) 보면대 및 의자는 10개 이상 사용 시 부과함.

[별표 2]

이용료 반환

(수영장, 헬스장)

반 환 기 준	
개시일 이전	이용료에서 반환수수료 공제 후 환급 ※반환수수료 : 이용료의 10% 해당금액
개시일 이후	반환수수료, 반환신청일 당일까지의 요금 일 할계산 적용 ※반환금액=이용료- {반환수수료+(이용료 /30)×이용일수} ,반환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함

(문화강좌 등)

반 환 기 준
1. 수강기간 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 2. 강습개시 후 -강습기간이 1월 이내 ·총강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반환 ·총강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반환 ·총강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미반환 -강습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강습기간이 1 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정규강좌는 3개월(12회)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등의 사유로 수업횟수는 변동될 수 있다.

※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달성문화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라 시설을 대 관하여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 5. (생략) 6.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9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사용 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신청자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센터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생략)	제3조(정의) ----- -- 뜻은 -----. 1. (현행과 같음) 2. ----- 따른 ----- -----. 3. ~ 5. (현행과 같음) 6. ----- 따라 ----- -----. 제6조(사용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정을 할 경우 --- -----. ③ ----- ----- ----- ----- 완료 ----- -----. 제9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되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삭 제>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u>군수가</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u>군수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이용료의</u>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u>의한</u>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u>의한</u>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u>의한</u>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u>의한</u>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u>의한</u>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6. 「아동복지법」에 <u>의한</u> 소년소녀가정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u>의한</u> 보호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u>의한</u>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9. (생략) ④ (생략) <신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u>군수는</u> ----- -----. ③ <u>군수는</u>----- -----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이용료의 -----. 1. ----- <u>따른</u> ----- 2. ----- ----- <u>따른</u> ----- 3. ----- <u>따른</u> ----- 4. ----- ----- <u>따른</u> ----- 5. ----- <u>따른</u> ----- 6. ----- <u>따른</u> ----- 7. ----- <u>따른</u> ----- 8. ----- <u>따른</u> -----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수영장 1일 입장 이용시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체감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u>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u>사용일 전일까지</u>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u>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u>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2회에 걸쳐 행사 전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u>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이용료를 사전 납부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u>제10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경우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u> 하여야 한다. 2. <u>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u> 3. <u>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u> 4. <u>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u> ④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u>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u> 제14조(관람료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관람권 매표금액에서 우선 징수하고 사후 정산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① ----- ---<u>사용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u>----- . --- <u>제14조에 따라</u> ----- ----- ----- ----- . ② ----- <u>제11조제1항에 따른</u> ----- ----- . ③ <u>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u> 1. <u>제10조제1항제6호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 반환</u> 2. <u>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0% 반환</u> 3. <u>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u> 4. <u>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u> ④ <u>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2에 따라 반환한다.</u> 제14조(관람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따른</u> ----- ----- ----- ----- ----- .

현행	개정안
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담당직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15조(기획공연 등 관람료)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입회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생략) 제17조(홍보물 게첨) ①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9조(변상 및 배상책임) ① ~ ② (생략) ③ 사용자의 임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람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4항에 의해 징수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생략)	⑤ 잔여표와 검표가 ----- ----- ----- -----. 제15조(기획공연 등 관람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따른 -----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홍보물 게첨)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 제19조(변상 및 배상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때 사용자는 손해배상 ----- ----- 따라 -----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0조(이용신청 및 입장의 제한)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무료시설 이용</u>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20조(이용신청 및 입장의 제한) ① ----- ----- -----, <u>시설의 무료 이용</u>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u>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u>」(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u>의한다</u>. 다만, 군에서 <u>출연하여</u>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u>재위탁</u>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5조의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u>재위탁</u> 할 수 없다.	제22조(위탁운영) ① ----- ----- 「<u>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u>」 ----- ----- <u>출연하여 설립한</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재계약</u> -----. ④ ----- ----- <u>재계약</u> -----.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생략) 1. <u>제5조에 규정한</u>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u>지원금</u>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생략) 4. <u>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u>. 5. (생략)	제24조(수탁자의 의무) (현행과 같음) 1. <u>제5조의</u> ----- -----. 2. <u>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u> ----- -----. 3. (현행과 같음) 4. <u>수탁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및 수탁 받은 재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5조(위탁의 취소) (생략) 1. 수탁자가 제24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 4. (생략)	제25조(위탁의 취소) (현행과 같음) 1. ----- 제24조의 ----- 2. ~ 4. (현행과 같음)
제26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 수탁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 ----- 제25조에 따라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회계 및 결산)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7조(회계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도·감독) ① ~ 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지도·감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에 따라 ----- ----- ----- -----.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 -----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 ----- 제5조에 따른 ----- -----.

[별표 1] 현 행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 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부가가치세액 (10%) 별도가산함
		70,000	49,000	35,000	63,000	45,000	35,000	58,000	42,000	30,000	49,000	35,000	3,000	2,000	1,500	
헬스장	이용 요금	50,000														

[별표 1] 개 정 안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 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부가가치세액 (10%) 포함 * 동일단체 소속 1일 입장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이용 요금	50,000														
사물함	이용 요금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000원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달성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붙임 3)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 발체**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교습개시 전 - 교습개시 후 · 교습기간이 1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교습기간이 1월 초과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미환급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

3. 제정이유

- 가.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창조로 인한 지역발전과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나. 지역 문화예술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의미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름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활동을 장려하며 각종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4조)
- 마. 진흥대상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군수는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을 규정함(안 제6조)

사. 군수는 행사 및 공연 위탁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아.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8조)

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위원,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5.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 각종 문화예술의 진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에 대한 대상범위와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제5조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해석상 개별 대상사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달성군지역 문화예술 발달과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제4조(시책과 장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고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의 대상과 범위)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행사·활동·사업(이하 본 조에서 “사업 등”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운영과 사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연 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위탁개최) 군수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무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기획, 집행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달성군의 문화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2020년

○ 주요내용 :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안 제5조)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단체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근거 규정 마련.

2. 비용발생 요인

○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의 운영과 사업 등 하는데 필요한 비용

3. 관련조문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각종 문화예술사업 활동 및 단체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 629백만원 정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풍향교 운영 및 교화사업 = 129,260,000원

○ 민속예술단체 지원육성 = 45,000,000원

○ 향사 지원 = 15,000,000원

○ 비슬산 참꽃 문화제 = 380,000,000원

○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 6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반영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6. 작성자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이진혁

[별 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629,000	629,000	629,000	629,000	629,000	3,145,000
문화예술진흥단체 운영 및 사업활동비		629,000	629,000	629,000	629,000	629,000	3,145,000
재원 조달		629,000	629,000	629,000	629,000	629,000	3,14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108,5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비		607,300	607,300	607,300	607,300	607,300	3,036,5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붙임 2)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

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

3. 개정이유

가.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인근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고, 현행 체육시설 관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낮은 전용사용료와 더불어 각종단체 감면율도 높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감면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 요구.

4. 주요내용

가. (안 제5조)

- 관내 체육동호인 단체 시설사용에 대한 혜택을 위하여 우선순위 부여

나. (안 제11조 별표2)

- 화원·다사테니스장 이용요금 및 테니스강습료를 신설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명곡체육공원 축구장, 하빈지구 체육시설 야구장 사용료를 형평성 있게 일원화하여 불평등 개선
- 체육시설 조기사용료 50% 감면조항 삭제

- 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및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한 감면혜택을 10% 줄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다. (안 제11조 별표3, 별표4)
-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 사용료를 인하하여 일원화
 - 요가 에어로빅 강좌를 신설하고, 기존의 상행위 강습료를 삭제하여 주민여가선용 기여
- 라. (안 제14조)
-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감면규정에 청소년 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추가하여 형평성 있게 운영하여 학교체육 육성
 - 대구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달성군소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 중인 축구부에 대하여 논공축구장만 국한된 무료사용을 달성군 소재한 모든 축구장으로 범위 확대하여 유소년 축구발전에 이바지.

5.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인근 지역의 체육시설 사용료와의 균형을 맞추고 관내에 산재한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평성 있게 일원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체육동호회의 감면조항 및 시설사용자들의 사용료 및 강습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서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의 각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을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달성군 소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축구부가 [별표 2] 체육시설 중 축구장의 무료사용 허가신청을 한 경우 다른 사용신청자들의 대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1일·주간 4시간 이내를 1회로, 월 5회까지 무료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가입된 유소년 축구클럽(단체)가 [별표 2] 체육시설 중 축구장을 일정 기일이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중 평일·주간 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 민 체 육 관			주 간 (2시간)	10,000	15,000	20,000	30,000
			야 간 (2시간)	15,000	22,500	30,000	45,000
가 창 체 육 공 원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 사 체 육 공 원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히 딩 크 드림필드풋살장		주 간 (1시간)	35,000	45,000	105,000	135,000
			야 간 (1시간)	50,000	75,000	150,000	225,000
명 곡 체 육 공 원	인 라 인 스 케 이 트 장	주·야간	-	-	-	-	
	다 목 적 운 동 장 (축구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군 민 운 동 장			주·야간	-	-	-	-
논 공 축 구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풋 살 장		주 간 (1시간)	35,000	45,000	105,000	135,000
			야 간 (1시간)	45,000	55,000	135,000	165,000
강 변 야 구 장			주 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달 성 스포츠파크	주 경 기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140,000	200,000	400,000	600,000
			야 간 (2시간)	200,000	300,000	600,000	900,000
	보 조 경 기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하빈지구 체육시설	야 구 장	주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축 구 장	주간 (2시간)	35,000	50,000	100,000	150,000
	농 구 장	주·야간	-	-	-	-
	족 구 장	주·야간	-	-	-	-
테니스장1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개인	주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야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단체	주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야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300,000		-	-
테니스장2 (회원테니스장, 다사테니스장)	개인	주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야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단체	주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200,000		-	-
		야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20,000		-	-
테니스 강습료		1개월(주4회)	130,000			
		1회	15,000			
비 고		1. <삭 제> 2.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4.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5.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6. <삭 제>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 (제11조관련)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달성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 생	유아 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월 50,000원													
	요 가 에어로빅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40,000		30,000			3,000		2,000		1,000			
비 고	1.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이상)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입장할인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별표 4】

상행위·방송중계 사용료 징수(제11조관련)

구 분		금 액
종 류		
상 행 위	광 애 드 별 료 (1 일 1 개 당)	• 국내아마추어경기 : 20,000 •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 50,000
	장내 난간 등에 부착·진열·게시되는 현수막 및 기타 광고물 게시 (1일 5㎡ 1점 기준)	• 고등학생 이하 국내경기(1일당) : 30,000 • 기타 국내경기·일반행사(1일당) : 50,000 • 국제경기·프로경기 (1일당) : 70,000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	• 기본사용료 (4시간) : 400,000
		• 초과사용료 (시간당) : 8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 관련 물품판매	• 판매부수 × 단가 × 20%
비 고	1.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첨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임시 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 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다. 4. 촬영 상업 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 분 종 류			중 계 방 송 료		비 고
			T V	라디오	
방송중계	체육경기	국내	100,000	50,000	
		국제	120,000	70,000	
	체육경기의 기타행사	국내	200,000	100,000	
		국제	240,000	140,000	
	비 고	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와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 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생략)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관) 하는 경기 또는 행사</u>
3. ~ 6. (생략)	4. ~ 7. (현행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와 각각 같음)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청소년</u>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 100분의 30	3. <u>어린이 및 청소년</u> ————— —————
4. <u>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 :</u> <u>100분의 40</u>	4. <삭제>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중 <u>논공축구장을</u> 이용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관내 각급학교에서 운영중인 축구부 에 대하여 월 3회 범위내에서 축구 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달성군 소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축구부가 [별표 2] 체육시설 중 축구장의 무료사용 허가신청을 한 경우 다른 사용신청자들의 대관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1일· 주간 4시간 이내를 1회로, 월 5회까 지 무료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④ 군수는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가입된 유소년 축구클럽(단체)가 [별표 2] 체육시설 중 축구장을 일정 기일이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중 평일·주간 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붙임 3)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참고 2**인근 지역 테니스장 사용료 현황**

구분		기준 시간	평일 사용료	비 고	
북구 테니스클럽	주간	3시간	200,000	1개월 10명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인원초과시 20,000	
	야간	3시간	120,000	주1회,1면,1개월	
수성구 테니스클럽	주간	3시간	200,000	1개월 10명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인원초과시 20,000	
	야간	3시간	120,000	주1회,1면,1개월	
동구 율하 테니스클럽	조기	3시간	270,000	1개월 10명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주간	3시간	230,000	1개월 10명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야간	3시간	130,000	주1회,1면,1개월	
달서구 성서운동장	주간	3시간	200,000	1개월 10명기준 주말, 공휴일 제외	
	야간	3시간	120,000	주1회,1면,1개월	
달서구 두류테니스장	주간	3시간	200,000	1개월 10명기준 주말, 공휴일 제외	
	야간	3시간	120,000	주1회,1면,1개월	

※ 대구광역시 테니스장 강습료 : 주4회 130,000원 / 주2회 70,000원
 대구광역시 동구 테니스장 강습료 : 주4회 150,000

참고 3**인근 지역 축구장 사용료 현황**

구 분	사용목적	단위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대구 강변축구장	체육경기	주간(1경기)	70,000	100,000	
	체육경기 외	주간(1경기)	200,000	300,000	
경산시 종합운동장	체육경기 (순수체육경기)	주간(2시간)	150,000	250,000	
		야간(2시간)	250,000	400,000	
	체육경기 외 (행사)	주간(2시간)	250,000	350,000	
		야간(2시간)	350,000	450,000	
대구 성서운동장	체육경기	주간(1경기)	70,000	100,000	
		야간(1경기)	100,000	150,000	
	체육경기 외	주간(1경기)	200,000	300,000	
		야간(1경기)	300,000	450,000	
대구 시민운동장 축구장	체육경기	주간(1경기)	200,000	300,000	
		야간(1경기)	300,000	450,000	
	체육경기 외	주간(1경기)	500,000	750,000	
		야간(1경기)	750,000	1,120,000	
대구 스타디움	체육경기	주간(1경기)	500,000	750,000	
		야간(1경기)	750,000	1,120,000	
	체육경기 외	주간(1경기)	1,000,000	1,500,000	
		야간(1경기)	1,500,000	2,250,000	
대구 북구 박주영축구장	체육경기	주간(2시간)	70,000	100,000	
		야간(2시간)	100,000	150,000	
	체육경기외	주간(2시간)	150,000	200,000	
		야간(2시간)	225,000	300,000	
칠곡군 종합운동장	체육경기	주간(2시간)	100,000	150,000	
		야간(2시간)	150,000	200,000	
	체육경기외	주간(2시간)	200,000	300,000	
		야간(2시간)	300,000	400,000	

참고 4**인근 지역 야구장 사용료 현황**

구 분	사 용 목 적	단위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 공휴일	
포항야구장	체육경기	주간	80,000	110,000	포항시 (4시간)
		야간	110,000	160,000	
	체육경기 외	주간	160,000	240,000	
		야간	240,000	300,000	
고령군 생활체육공원	경기(야구장)	주간	100,000	200,000	고령군
	경기(리틀야구장)	주간	70,000	140,000	
사문진 생활체육공원	경기(리틀야구장)	주간	70,000	140,000	
성주군 야구장	체육경기	주간	50,000	100,000	성주군 (2시간)
	체육경기 외	주간	100,000	200,000	
시민운동장	체육경기	주간	100,000	150,000	대구시 (1경기 기준)
		야간	150,000	220,000	
	체육경기 외	주간	200,000	300,000	
		야간	300,000	450,000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

예 고 안																제출자 및 의견										주관부서 검토의견																																																																																																				
조례안 제11조제1항제2호 체육시설사용료(별표3)																○ 제 출 자 : 달성국민체육센터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228-2 ○ 전화번호 : 053) 659-4000~1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내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 달성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이용료(수영장, 헬스장)가 달리 책정되어 추후 센터운영상에 발생할 민원 및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3개 센터의 시설이용료(수영장, 헬스장)를 통일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반영여부 : 반영 ○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센터의 시설 이용료를 똑같이 통일화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기로 함.																																																																																																				
<table><tr><th colspan="16">[별표 3] 현 행</th></tr><tr><th>시설명</th><th>구분</th><th colspan="3">성인 (만19세이상)</th><th colspan="3">중.고생 (만13~만18세)</th><th colspan="3">유아,초등 (만12세 이하)</th><th colspan="2">아쿠아로빅</th><th colspan="3">1회입장요금</th></tr><tr><td rowspan="4">달성국민체육센터</td><td rowspan="2">수영장 (월)</td><td>주 5회</td><td>주 3회</td><td>주 2회</td><td>주 5회</td><td>주 3회</td><td>주 2회</td><td>주 5회</td><td>주 3회</td><td>주 2회</td><td>주 3회</td><td>주 2회</td><td>성인</td><td>중고생</td><td>유아초등</td></tr><tr><td>77,000</td><td>53,900</td><td>38,500</td><td>69,300</td><td>49,500</td><td>38,500</td><td>63,800</td><td>46,200</td><td>33,000</td><td>53,900</td><td>38,500</td><td>3,200</td><td>2,200</td><td>1,600</td></tr><tr><td>헬스장 (월)</td><td colspan="14">50,000원</td></tr><tr><td><신설> 요 가 에 어 로 빅 (월)</td><td>주 5회</td><td>주 3회</td><td>주 2회</td><td colspan="2">사물함 (월)</td><td>대</td><td>중</td><td>소</td><td colspan="6"></td></tr><tr><td></td><td></td><td>50,000</td><td>40,000</td><td>30,000</td><td colspan="2"></td><td>3,000</td><td>2,000</td><td>1,000</td><td colspan="6"></td></tr></table>																[별표 3] 현 행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77,000	53,900	38,500	69,300	49,500	38,500	63,800	46,200	33,000	53,900	38,5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50,000원														<신설> 요 가 에 어 로 빅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40,000	30,000			3,000	2,000	1,000							비 고 1.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이상)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별표 3] 현 행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77,000	53,900	38,500	69,300	49,500	38,500	63,800	46,200	33,000	53,900	38,5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50,000원																																																																																																																												
	<신설> 요 가 에 어 로 빅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40,000	30,000			3,000	2,000	1,000																																																																																																																					
<table><tr><th colspan="16">[별표 3] 개 정 안</th></tr><tr><th>시설명</th><th>구분</th><th colspan="3">성인 (만19세이상)</th><th colspan="3">중.고생 (만13~만18세)</th><th colspan="3">유아,초등 (만12세 이하)</th><th colspan="2">아쿠아로빅</th><th colspan="3">1회입장요금</th></tr><tr><td rowspan="4">달성국민체육센터</td><td rowspan="2">수영장 (월)</td><td>주 5회</td><td>주 3회</td><td>주 2회</td><td>주 5회</td><td>주 3회</td><td>주 2회</td><td>주 5회</td><td>주 3회</td><td>주 2회</td><td>주 3회</td><td>주 2회</td><td>성인</td><td>중고생</td><td>유아초등</td></tr><tr><td>77,000</td><td>54,000</td><td>39,000</td><td>69,000</td><td>50,000</td><td>39,000</td><td>64,000</td><td>46,000</td><td>33,000</td><td>54,000</td><td>39,000</td><td>3,200</td><td>2,200</td><td>1,600</td></tr><tr><td>헬스장 (월)</td><td colspan="14">50,000원</td></tr><tr><td><신설> 요 가 에 어 로 빅 (월)</td><td>주 5회</td><td>주 3회</td><td>주 2회</td><td colspan="2">사물함 (월)</td><td>대</td><td>중</td><td>소</td><td colspan="6"></td></tr><tr><td></td><td></td><td>50,000</td><td>40,000</td><td>30,000</td><td colspan="2"></td><td>3,000</td><td>2,000</td><td>1,000</td><td colspan="6"></td></tr></table>																[별표 3] 개 정 안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50,000원														<신설> 요 가 에 어 로 빅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40,000	30,000			3,000	2,000	1,000							비 고 1.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이상)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입장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별표 3] 개 정 안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50,000원																																																																																																																												
	<신설> 요 가 에 어 로 빅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40,000	30,000			3,000	2,000	1,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

3. 제정이유

- 가.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
- 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진흥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
- 다. 기존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관리의 일원화와 간소화

4.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3조 ~ 제9조)
- 다.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안 제10조 ~ 제19조)
- 라. 전문체육을 진흥하고 전문 체육단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
(안 제20조 ~ 제21조)
- 마.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
(안 제22조 ~ 제23조)
- 바. 장애인체육을 진흥하고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
(안 제24조 ~ 제25조)
- 사. 보칙(사전협의, 보고·검사, 포상, 준용)(안 제26조 ~ 제29조)

5.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제8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등 이상 3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의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번 조례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누락되었으며,
- 제14조제3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군 체육회이사회에서 대행한다.” 고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

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과

금번에 의원발의안으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군정참여에서의 양성평등) 제1항에서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남성위주로 구성된 군 체육회이사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군체육회 이사회의 역할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에서는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고 보류한 후에 다음 회기에서 수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하며, “체육단체”는 군 체육회 및 군 관내 각 읍, 면 지회와 가맹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하며, “생활체육단체”는 군 생활체육회 및 각종목별 연합회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여가 선용,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2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제3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는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관련 전문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의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3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10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체육발전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1. 군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지역체육진흥사업
3. 우수선수육성사업
4.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역할은 군 체육회이사회에서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정책사업단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전문체육의 진흥

제20조(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선발 및 육성
3. 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체육단체 추진 사업의 필요 경비 및 사무실 운영 경비
5. 체육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8.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9.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22조(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단체에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생활화운동의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단체 추진사업의 필요 경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
6. 생활체육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7.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6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2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단체에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2.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운영
4. 장애인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7장 보칙

제26조(사전협의)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는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검사)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일반적 경과조치)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각 이를 폐지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폐지된 조례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와 경비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주요내용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23조, 제25조)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 비용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함

2. 비용발생 요인

- 전문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 사업비 및 운영경비

3. 관련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문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 사업비 및 운영 경비 산정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 824백만원 정도**

- 전문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 사업비 및 운영경비
 - 824,686,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반영(일부 국, 시비 보조)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6. 작성자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오병화

[별 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824,686	824,686	824,686	824,686	824,686	4,123,430
지역 체육진흥		824,686	824,686	824,686	824,686	824,686	4,123,430
재원 조달		824,686	824,686	824,686	824,686	824,686	4,123,43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145,728	145,728	145,728	145,728	145,728	728,640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비		76,864	76,864	76,864	76,864	76,864	384,320
군비		602,094	602,094	602,094	602,094	602,094	3,010,47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붙임 2)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

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① 예산편성 원칙(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

㉔ 보조금 지원 대상(법 제17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